

의안번호	2216670
의 퇴 인	김종민 의원
회 답 일	2026. 3. 31.
추계번호	26A0806

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①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5조), ②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위원회의 설치·운영(안 제6조) 등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5,900만원(연평균 3,2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5조)	50	—	—	50	—	100	20
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6조)	7	13	13	13	13	59	12
합 계	57	13	13	63	13	159	32

주: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3년마다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2	안 제6조(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위원회)	○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(제1항) － 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－ 2.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－ 3.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권고에 관한 사항 － 4. 제20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선의 신청에 관한 사항 － 5.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○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(제2항) ○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됨(제3항) ○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.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(제4항) －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－ 2. 중소기업 및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	의무규정
3	안 제7조(재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하여 예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금을 활용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－ 1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－ 2. 「기술보증기금법」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－ 3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－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중소기업 전환 지원 활동을 위하여 기업, 대학, 연구소 등을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에 출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4	안 제8조(인력지원 등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하여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9조, 제10조 및 제35조의5 각 호의 사업을 인공지능 중소기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를 도입 및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20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5	안 제9조(자금지원 등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,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을 도입 및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·운영하도록 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6	안 제10조(금융·세제·투자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－ 1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,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,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정책자금 융자 － 2. 금융기관의 인공지능 전환 전용 특례보증·금리우대 상품 개발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도입·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제지원을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음(제2항) － 1.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－ 2. 인공지능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－ 3.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 및 전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－ 4. 인공지능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, 전용펀드 조성, 민간투자 연계 등의 투자지원을 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7	안 제11조(인공지능 기반 창업 및 사업화 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벤처기업 등을 육성·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 － 1. 창업자금 및 초기운영자금 지원 － 2. 인공지능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 제공 － 3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매칭·공동사업화 지원 － 4.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업을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등 관계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8	안 제12조(해외시장 진출 등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 기업 또는 해외 기관과 협력모델 개발 등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－ 1. 해외 공동기술 개발 － 2. 해외 공동시장 개척 － 3.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·생산 등을 위한 투자 － 4. 인공지능 관련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－ 5. 우수 전문인력의 발굴 및 유치 － 6.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9	안 제13조(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전환 촉진)	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－ 1. 인공지능기술 도입을 위한 컨설팅 및 기술 지원 － 2. 인공지능 제품 및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 비용 지원 － 3. 인공지능기술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0	안 제14조(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음 － 1. 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 전환 지원 － 2. 소상공인 인공지능 제품 및 인공지능 솔루션 등의 도입에 필요한 비용 및 인프라 지원 － 3.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교육,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－ 4.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－ 5. 그 밖에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재량규정
11	안 제15조(데이터 확보 및 품질향상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인공지능 전환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－ 1. 데이터의 결합과 합성데이터의 생성·관리·활용에 관한 사항 － 2. 데이터의 품질 향상·가공·표준화에 관한 사항 － 3. 인공지능 시스템의 효과적인 훈련과 학습을 위한 데이터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에 관한 사항 － 4. 데이터의 비식별화, 익명화, 암호화 등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의 기술적 조치 등의 개발 및 도입에 관한 사항 － 5. 그 밖에 중소기업의 데이터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재량규정
12	안 제17조(오픈소스 기반 협력 촉진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정보를 공개·공유하는 기업 또는 스타트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할 수 있음(제1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방형 인공지능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인프라,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그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3	안 제18조(학습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 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·활용·가공하기 위하여 학습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에 데이터 구축 인력의 양성·육성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(제2항) － 1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 － 2. 대학, 전문대학, 연구기관 등 － 3. 인공지능과 관련한 대기업·중견기업·중소기업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14	안 제19조(고영향 인공지능 개발 등을 위한 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이행에 대한 지원,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의 수립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15	안 제21조(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 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음(제1항) － 1. 지역 특성에 맞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－ 2. 지역 내 인공지능 관련 기업 및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연계 지원 － 3.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성공사례 발굴·포상 및 홍보 － 4. 그 밖에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하여 컴퓨팅, 인프라 공동 활용, 테스트 환경 제공 등을 지원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6	안 제22조(지역별 인공 지능 혁신센터의 지정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, 단체 또는 법인을 중소기업 인공지능 혁신센터(이하 “인공지능 혁신센터”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과 인공지능 혁신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17	안 제23조(인공지능 혁신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)	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인공지능 혁신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기술개발, 실증,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 － 1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－ 2. 대학·연구기관·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시설, 실증시설 등 연구시설·장비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	재량규정
18	안 제24조(지식재산·데이터·영업비밀 보호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·데이터·영업비밀의 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추진하여야 함 － 1. 데이터 저작권, 기술 오용 방지, 영업비밀 유출 방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 마련·보급 － 2. 지식재산·데이터 보호 관련 교육·상담 및 법률지원 제공 － 3.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·조사 및 구제 지원체계 구축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	○	—
2	안 제6조(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위원회)	○	—
3	안 제7조(재원)	X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—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이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, 기술보증기금,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을 활용하여 제정안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경우 기금의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지출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추가재정 소요 추계가 불가능함 —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할 목적으로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,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,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— 지역별로 인공지능 혁신센터를 지정하여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지원사업 대상과 지원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추가재정 소요 추계가 불가능함
4	안 제8조(인력지원 등)	X	
5	안 제9조(자금지원 등)	X	
6	안 제10조(금융·세제·투자 지원)	X	
7	안 제11조(인공지능 기반 창업 및 사업화 지원)	X	
8	안 제12조(해외시장 진출 등)	X	
9	안 제13조(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전환 촉진)	X	
10	안 제14조(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지원)	X	
11	안 제15조(데이터 확보 및 품질향상)	X	
12	안 제17조(오픈소스 기반 협력 촉진)	X	
13	안 제18조(학습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 지원)	X	
14	안 제19조(고령층 인공지능 개발 등을 위한 지원)	X	
15	안 제21조(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 지원)	X	
16	안 제22조(지역별 인공지능 혁신센터의 지정)	X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7	안 제23조(인공지능 혁신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)	X	
18	안 제24조(지식재산·데이터·영업비밀 보호)	X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다수의 재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,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함

○ 제정안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현행 재정사업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 지원사업: 중소벤처기업부 소관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-내(내)역사업명 (회계, 코드)	사업 내용	2026년도 예산
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-딥테크 AI 스타 트업·스케일업 펀드 (중진기금, 5264-301)	AI·딥테크 분야 유망기업의 창업 단계부터 스케일업까지 성장 단계별 대규모 집중 투자 지원	200,000
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-자율형공장 (일반회계, 2111-303)	AI·디지털트윈 기반 작업자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 “자율형공장” 구축지원, 제조현장에 특화된 AI기술을 활용하여 공정최적화, 예측유지보수, 불량검출 등 특정목적형 AI공장 구축	95,000
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-대중소 상생형 (일반회계, 2111-303)	정부, 대기업 간 협업을 통해 AI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	10,000
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-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(일반회계, 2111-303)	중소 제조현장의 신속한 AI 전환 촉진을 위해 1~2년 내 성과도출이 가능한 스마트제조 분야 AI 제품·서비스 상용화 및 확산 지원	64,500
제도약속진-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(중진기금, 5161-302)	AI 솔루션, AI 인프라, AI 인력양성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AI 활용·확산 프로그램 지원	49,000
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-혁신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 (소진기금, 4131-316)	AI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서비스 도입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만의 새로운 가치와 차별화된 제품·서비스 창출	14,360

스마트서비스 지원 (일반회계, 2111-304)	AI 등 첨단 ICT 활용, ① BM 창출, 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	10,888
창업사업화지원-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-AI 스타트업 특화지원 (일반회계, 5132-302)	4대 핵심 도메인(제조·바이오·콘텐츠·금융) 및 LLM 등 국내 대·중견기업과 유망 AI 스타트업의 협업 지원을 통한 기술 고도화 및 판로 확보	20,000
창업사업화지원-창업패키지-초기,도약 (일반회계, 5132-302)	빅데이터·AI 분야의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	20,500
창업성공패키지-AI 딥테크 특화과정 (중진기금, 5152-302)	성장 잠재력이 높은 AI, 로봇, 바이오 등 딥테크 분야 청년창업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등 지원	19,500
지역특화 제조 데이터 활성화 (일반회계, 2111-312)	지역에 특화한 데이터·AI 활용 플랫폼 구축, AI 학습 데이터셋 구축, 지역 제조기업의 데이터·AI 활용 지원 등	6,000
창업성공패키지-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 (중진기금, 5152-302)	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접목되는 산업분야에 대한 인공지능 실무인재 양성 교육과정 운영	2,900

-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외에, 본 추계에서는 ①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5조), ②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6조)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함
- 제정안의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5조)

-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비용은 추계 첫 해부터 3년마다 연구용역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2027년에 5,000만원, 2030년에 5,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
 - 유사 연구사례로는 “중소기업 AI 활용확산 및 혁신성장을 위한 법령체계 연구”(중소벤처기업부, 2025년, 5,000만원), “경기도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실태조사 용역”((재)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, 2024년, 5,200만원) 등

이 있음

- 동 계획은 3년 주기로 수립하므로 법 시행 첫해인 2027년과 2030년에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2]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5조)	50	-	-	50	-	100	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8조)

□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위원회의 설치·운영 비용은 민간위원의 회의참석수당으로 함

- 민간위원 수와 회의 개최 횟수를 곱한 값에 민간위원 1인당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함
- 참석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민간위원의 수는 11명, 회의 개최 횟수는 연 4회(분기당 1회)로 가정함
 - 안 제6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, 안 제6조제4항에서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함을 고려할 때 민간위원의 수는 정원의 과반인 11명으로 가정함
 - 다만, 위원회 구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27년은 하반기에만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
- 수당 단가는 기획예산처의 「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 1)을 준용하여 1회 대면회의시 30만원을 지급함
 - 「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 2)에 따라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

1) 「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(기획예산처)

·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,000원 내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100,000원 내로 편성
·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,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, 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,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지급

2) 「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(기획재정부)

차. 위원회 참석비

- 다만,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 이 경우

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만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,
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

- 위원회의 위원 수는 결원 없이 유지되고, 회의 개최·참석 횟수 및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회의 참석수당은 민간위원 수에 회의 횟수와 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되며,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5,900만원(연평균 1,200만원)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
 - 2027년: 민간위원 수(11명) × 회의 횟수(2회) × 수당 단가(30만원) = 연 660만원
 - 2028~2031년: 민간위원 수(11명) × 회의 횟수(4회) × 수당 단가(30만원) = 연 1,320만원

□ 민간위원 1인당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30만원으로 할 경우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,900만원(연평균 1,200만원)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[표 3]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위원회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 6조)	7	13	13	13	13	59	1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장설희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654	shjang@assembly.go.kr